

※ 아래의 성명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문의 사항 등이 있으실 때에는 정확한 의사 소통을 위해 (사)엔케이워치의 대표 이메일 nkgulag@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엔케이워치 성명 / 2021년 2월 10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FOOTPRINTS에 무단 게재한 북한인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즉각 삭제하고, 공개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주요 내용

1) 개요

사단법인 엔케이워치(NK Watch)는 전환기정의워킹그룹(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이하 TJWG)이 TJWG의 웹사이트 FOOTPRINTS에 게재한 북한인권 피해자 데이터가 게재된 사실을 지난 2021년 1월 28일 언론 매체의 보도들을 통해 인지했습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 후 엔케이워치는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TJWG가 엔케이워치와 증언자(엔케이워치에 북한인권 피해사실을 증언한 북한이탈주민)의 동의 없이 피해자(증언자들의 재북 가족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총 125건을 무단 게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엔케이워치는 TJWG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뿐 아니라 증언자들에게 2차 피해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을 우려해 TJWG가 무단 게재한 개인정보의 즉각적인 삭제 조치 등의 요구를 담은 “풋 프린츠’(<https://nkfootprints.info>)에 게재된 게시물 삭제 요청의 건” 제하의 ‘내용증명’을 2021년 2월 9일(화) 오전에 발송했습니다.

2) 무단 게재 데이터 현황과 근거

엔케이워치가 TJWG의 웹사이트 『‘FOOTPRINTS: 북한이 잡아간 사람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https://nkfootprints.info/ko/>』에 게재된 데이터들 중 현재까지 무단 게재로 확인한 데이터는 총 125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과 근거 자료는 ‘내용증명’을 통해 TJWG에 발송했습니다. TJWG가 엔케이워치와 증언자의 동의 없이 무단 게재한 데이터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TJWG가 게재한 ‘북한 내 강제 실종’ 피해 데이터 85건 중 엔케이워치가 유엔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이하 WGEID),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이하 WGAD)에 제출한 데이터 72건 무단 게재.

2) TJWG의 ‘강제 송환’ 피해 데이터 61건 중 엔케이워치가 WGEID, WGAD에 제출한 데이터 53건 무단 게재.

3) 총 125건의 피해자와 관련된 ‘구제절차’ 현황을 별도로 무단 게재.

엔케이워치는 WGEID, WGAD에 발송한 청원서와 양 기관이 엔케이워치에 발송한 청원서 접수 현황(조사보고서 일련번호 등)을 근거로 TJWG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데이터 146건의 데이터들을 직접 대조,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무단 게재 데이터만 125건이며, 이 건수는 추가 대조 작업을 통해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 NKW의 입장과 요구사항

1) 입장

엔케이워치는 TJWG의 이러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직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NGO는 정직과 신뢰가 생명입니다. 엔케이워치는 TJWG에 ‘북한 내 강제 실종’, ‘강제 송환’ 피해 데이터를 제공한 바 없고, 사용을 동의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엔케이워치가 북한인권 피해 규명을 위해 조사 및 조치를 위탁한 WGEID, WGAD 외에 TJWG를 비롯한 그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공개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게재할 권리가 없습니다. WGEID, WGAD의 웹사이트에 엔케이워치의 청원서를 바탕으로 한 조사보고서가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명시된 개인정보를 TJWG가 2차적으로 공개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TJWG측은 언론 매체들에서 관련 단체들과 개인들의 상호신뢰를 통해 피해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엔케이워치는 TJWG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사용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이는 재고의 여지가 없는 ‘거짓’입니다.

둘째,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TJWG는 상기에서 언급한 언론 매체에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끝까지 추적해 진상 규명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TJWG가 북한인권 피해와 관련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위해 사법적 혹은 제2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원출처인 증언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 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에 따라 엔케이워치는 TJWG의 증언자들의 동의 없는 북한인권 피해 데이터 게재는 TJWG측이 밝힌 데이터베이스 구축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요구사항

이상의 사실과 입장을 바탕으로 엔케이워치는 TJWG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TJWG가 웹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데이터들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TJWG가 엔케이워치의 기록을 무단 사용했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엔케이

이워치와 TJWG 모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잡음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TJWG는 증언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게재했고, 증언자들은 저희에게 이 사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즉각적인 대응을 해 줄 것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케이워치는 증언자들의 피해 호소를 외면할 수 없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둘째, TJWG가 웹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무단 게재와 관련해 증언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한 피해 구제 조치 즉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엔케이워치는 증언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아울러 TJWG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무단 게재 사실에 대해 TJWG의 웹사이트 및 SNS 등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엔케이워치와 관련된 데이터들 외에 다른 단체나 개인의 데이터들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게재한 사실이 없는지도 확인하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이와 같은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2월 10일

사단법인 엔케이워치

[참고]

엔케이워치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하 증언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재북 당시의 인권피해 경험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케이워치는 증언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청원서(petition)를 영문으로 작성해 WGEID, WGAD 등에 제출해 왔습니다.

WGEID와 WGAD에 제출되는 청원서는 양측의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 당국에 피해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관계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케이워치는 증언자들의 동의를 받아 WGEID와 WGAD에 청원서를 제출해 왔으며, 양측에 증언자 및 피해자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청원서에 명시된 정보에 대해서는 유엔 내부에서만 활용할 것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해 왔습니다.

엔케이워치는 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지난 2020년 10월 22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유엔 산하기관에 제출한 청원서 사본 768건을 서울에 소재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서울)에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차원에서 기탁한 바 있고, 동 기관으로부터 감사서한을 받기도 했습니다. 엔케이워치는 이 768건의 사본 역시 유엔에 한해 열람, 사용을 할 것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약 받았습니다.